

제 876 호

1981.12.10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박영수

편집 : 공보관 이충우

전화 72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25-6090

시보

차례

㉠ 조 례	
제 1564 호 :	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 3
제 1565 호 :	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 4
제 1566 호 :	서울특별시지하천운입조례중개정조례 5
제 1567 호 :	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 5
제 1568 호 :	서울특별시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6
제 1569 호 :	서울특별시오물청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7
㉡ 훈 령	
제 555 호 :	서울특별시공원감시원본부규정폐지규정 (안) 7
제 556 호 :	서울특별시관광안내원본부규정폐지규정 (안) 8
㉢ 도 시	
제 430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고시 8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2153

제 431 호 :	육류연등가격고시	10
제 432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고시	10
제 433 호 :	서울이수지구토지구획전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결정	11
제 597 호 (송구) :	'82 중구시범가로정비지구지정고시	12
제 74 호 (동작구) :	'82 동작구시범가로지정고시	12

◎ 공 고

제 356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준공공고	12
제 357 호 :	열사용기자재제조업체영업정지	13
제 359 호 :	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	13
제 360 호 :	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	14
제 361 호 :	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	15
제 362 호 :	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	16
제 363 호 :	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	17
제 364 호 :	개포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공람공고	17
제 366 호 :	제 2 종전기공사면허실효	18
제 367 호 :	도시계획사업 (시장) 완료공고	18

◎ 사 령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.12.10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

○서울특별시조례 제 1564 호

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
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제 2 가. 급수사용료 요율표율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제 2 나. 급수종별구분표 1. 제 1 종란 1호 적요란에 "피아노 개인 지도제외"를, 2. 제 2 종란 "연초소

매소" 다음에 "신문보급소,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, 전용면적 3평미만인 복덕방, 전용면적 3평미만인 문방구, 전용면적 3평미만인 만화가게"를 삽입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조례는 198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전 등) 이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를 격월제로 점진부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 다만, 1원 미만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1. 1982년 1월조정분:

조정량의 11/12 증전요율

조정량의 1/12 개정요율

2. 1982년 2월조정분:

조정량의 5/12 증전요율

조정량의 7/12 개정요율

구분 업종	1개월기본요금		조 과 사 용 료	
	기본수량(㎥)	기본요금(원)	사 용 구 분(㎥)	금 당 단 가(원)
제 1 종	30	7,880	31-200	390
			201-300	520
			301 이상	670
제 2 종	20	2,000	21 이상	245
제 3 종	15	575	15-30	75
			31-50	165
			51 이상	225
제 4 종	500	250,000	501 이상	830
제 5 종	500	50,000	501 이상	135
제 6 종	사용수량 1 ㎥ 당 × 60 원			

구 별	1 개월 기본요금		초과사용료	
	기본수량(㎡)	기본요금(원)	사용구분(㎡)	당단가(원)
제 7 종	100	5,000	101 이상	50
제 8 종	사용수량 1 ㎡당 390 원			

※시설소화전 기본요금 1,000 원 (1년분율 * 1 회에 징수할 수 있다) 으로 하고, 전설사용료는 제 6 종 요율에 의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.12.10

서울특별시상 박 영 수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65 호

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 요금 징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조례는 유료도로법 제 3 조 및 도로법 제 35 조,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 관리청이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운반

기에 대한 통행요금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에 다음의 단서를 추가한다.

다만, 비도로 관리청이 건설관리하는 원효대교의 통행 요금은 별표 3 에 의한다.

제 3 조 제 2 항중 “시장이 발행하는”을 “시장 또는 비도로 관리청이 발행하는”으로 한다.

제 6 조를 제 7 조로 하고 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6 조 (적용의 범위) 시장은 이조례규정 사항의에 필요한 비도로 관리청의 유료도로 관리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
별표 1 에 별지사항을 별도로 추가한다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
(별표 1 추가사항)

노선명	징수구간	징수기간
원효대교	자. 용산구원효로 4 가 113 번지 지. 영등포구여의도동 102	자 1981.12.10 지 2001.12.9

(별표 3) 원 효 대 교 통 행 요 금

차량	2륜차, 3륜차	승용차, 화물차, 택스	특수차 (10 톤이상)
요금	100 원	200 원	200 원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.12.10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566호

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중
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을 다음과같이 한다.
제2조 (운임) ①지하철운임은 통산 거리 비례제에 의하여 승차거리 8킬로미터까지는 기본운임 110원을 징수하고, 8킬로미터 초과하는 1킬로미터마다 7원 82전을 가산 징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8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.12.10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567호

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
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중 (고요1)을 밑줄치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82.1.1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 공 원 입 장 료

종 별	사 용 기 준	금 액	비 고
일반공원	대인 1인당	150	○ 단체는 기본요율의 30%범위내에서 시장이 인하조정할 수 있음. ○ 조기산책의 경우는 일반공원이장과의 10일분을 징수함.
	소인 "	100	
어린이대공원	대인 "	400	
	소인 "	150	

주) 어린이 : 국민학교학생 및 만 7세 (소인) 이상 12세이하의자
(다만, 유취및운동시설 사용의 경우는 만 4세이상 12세이하의자)
학 생 : 정복을 착용하거나 학생

중을 소지한 중·고등학교 교 학생
어 린 : 어린이, 학생, 군인 및 만 6세이하의자 이외의자
대 인 : 어른 및 학생
단 체 : 어린이, 학생, 군인 또는

어른 30인이상의 동원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함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.12.10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568호

서울특별시오물수거료
징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 3 조중 "별표"를 별지와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
시행한다.

(별표)

국무총리와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시 오물정소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
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.12.10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國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569 호

서울특별시오물정소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오물정소에 관한 조례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5조 제 1항중 벌표1을 다음과
같이 한다.

구 분	차 량	자 본 금
분 노 치 리 업	용량 10,000 리터 이상의 용인차 (바름차)	법인 : 2,000 만원이상 개인 : 3,000 만원이상
쓰 레 기 치 리 업	적재량 4 톤이상의 차량 2 대이상	법인 : 2,000 만원이상 개인 : 3,000 만원이상

제 10 조 제 1항중 제 1호 및 제 2
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신규허가신청서 : 20,000 원
2. 변경허가신청서 : 15,000 원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
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
에 허가받은 업체는 이 조례 시
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 5조 제
1항벌표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
한다.

훈 령

서울특별시 공원감시원 부무규정 제

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81.12. 7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國

◎서울특별시훈령 제 555 호

서울특별시공원감시원부무규정
폐지규정 (안)

서울특별시 공원감시원 부무규정을
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
한다.

서울특별시 관광안내원 복무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81.12. 7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추

◎ 서울특별시훈령 제 556 호

서울특별시관광안내원 복무규정
폐지규정 (안)

서울특별시 관광안내원 복무규정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0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8 호 (81. 4. 7) 로 지적승인된 당구 쌍문동 309 의 3 번지일대의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규정과 건설부 고시 463 호 (79. 12. 10)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사업시행허가하고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 및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12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도봉구 쌍문동 309 의 3 번지의 14 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서울특별시

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: 12,998㎡ (3,932 평) 국민학교

라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장

마.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

1) 착공예정일 : 1981.12.15

2) 준공예정일 : 1983.12.14

바. 수문장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(별첨)

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, 성명 (별첨)

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자의 의 권리명세					
명칭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의 의 권리명세
충미 국민 학교	도봉구 쌍문동	311-2	전	37 평	없음
		312	답	408	"
		314-1	"	710	"
		-3	"	665	"
		-5	"	434	"
		-6	"	136	"
		-16	"	22	"
		345-13	"	10	"
		312-1	구	1,187 중 475	"
		309-3	대	555	"
		-14	"	40	"
		산 25-1	임	672.8	"
		224	묘	1,106	"
		225		736 중 685.2	"
		산 227	임	15,570 중 6,840	"
합 계		15 필		12,998 평 (3,932 평)	

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판적인의 주소, 성명					
학교명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 주소, 성명
충미 국민 학교	도봉구 쌍문동	311-2	전	37 평	번동 418-3 이권섭
		312	답	408	" " "
		314-1	"	710	쌍문동 357 한성대
		-3	"	665	" 372 김도이
		-5	"	434	충무로 5가 2-4양명훈
		-6	"	136	" " "
		-16	"	224	쌍문동 317 최병광
		345-13	"	10	" 372 김도이
		312-1	구	1,187 중 475	서울특별시

21-10 제 876 호 시 보 1981.12.10

학교명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주소, 성명	이해관계인
		309-3	대	555 ㎡	쌍문동 309-3 황 손	없 음
		-14	"	40	" "	"
		산 25-1	임	672.8	" "	"
		224	묘	1,106	묘동 119 최준상	"
		225		706 중 685.2		"
		산 227	임	15,570 중 6,840	학교법인한국전력학원	"
합	계	15 필		12,998 ㎡ (3,932 평)		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1 호

육류연동가격 고시

육류연동가격시행에 관한 농수산부
훈령 제 490 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의
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
고시한다.

1981.12.7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
1. 육류연동가격

돼지고기 (성육 600 그램당)

2,250 원

2. 시행일

1981.12.10 부터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2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 고시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
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
724의 33 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
(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) 을
승인하고 동법 제 33 조제 4 항의
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다
옴과 같이 결정 (변경) 고시한다.

1981.12.

서울특별시장

1.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 결정조서						
구 분	등 급	류 별	폭 원	연 장	기 점	종 점
기 정	소 로	I	10 m	220 m	방배동 730	방배동산 212
변 경	"	I	10 m	200 m	"	"

2. 변경사유	○ 기 고시된 도로의 도로구배 및 폭선이 급커브이므로 완만하게 처리 ○ 타인 토지내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자 본인분 토지내로 선형변경 첨부 관계도면	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동법시행령제 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. 1981.12.12. 서울특별시 장 1. 사업명 :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.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236 구획 일대 3. 변경내용 : 도로일부변경
---------	---	--

◎ 서울특별시 고시제 433 호

서울이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

서울도시계획 이수지구 토지구획정리

가. 도로변경조서

구분	노선명	폭 원	연 장	시 점	종 점
기 정	소 3-124	6 m	217.6 m	대 2- 32	영등추가지구 지구제
변 경	"	" "	42.6 "	소 3-128	"
기 정	소 3-125	" "	142 "	" 3-126	"
변 경	"	" "	42.6 "	" 3-128	"
기 정	소 3-126	" "	187 "	" 3-101	소 3-125
변 경	"	" "	67 "	"	소 3-123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21-12 제 876 호 시

보 1981.12.10

◎중구고시제 597 호

'82 중구시법가로정비
지구 지정고시

1.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시행
규칙 제 7 조제 1 항에 의하여 '82
중구 시법가로정비지구를 다음과
같이 지정 고시한다.

2. 시법가로정비지구내의 모든 광고
물은 고시일로부터 정비계획이 확
정될 때까지 신규개설 및 변경행
위를 할 수 없다.
3. 관계도서는 중구청 건설관리과에
비치 공람한다.

1981.12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시법가로정비지구

구	간	연	장	비	고
청	제	로			
(강원은행 ~ 평화시장간)		3.1	km	도로변 건물부분 및 가시	권내

◎동작구청고시제 74 호

'82 동작구시법가로지정고시

1.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시행
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
고물 계획정비 지구를 아래와 같

이 지정 고시 함.

2. 계획정비 지구내의 모든 광고물
은 고시일로부터 정비계획이 완료
될때까지 신규허가 및 변경행위를
할 수 없다.
3. 관계도서는 동작구 건설관리과에
비치 공람한다.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가. 계획정비지구:동작로

구	간	연	장	비	고
제1한강교 ~ 국립묘지		2	km	본동 26 번지 ~동작동산 44 번지	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56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
준공 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306 호 (A1.8.27)로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 허가된 학교
용지공사가 완료되었기 건설부고시 제
463 호 (79.12.10)의 권한위임 및
도시계획법 제 85 조의 규정에 의거 도
시계획사업(학교) 완료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
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
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
보인다.

1981.12. 7.

서울특별시 장

가. 사업시행지 : 영등포구 양평동 3가
91번지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
업 (학교) 양평중학교

다. 사업면적 : 8,962.3 ㎡

라. 사업자주소와 설명 :

종로구신문로 2가 2-77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

마. 사업의 허가 및 준공년월일

허가년월일 : 1980. 8. 26.

준공년월일 : 1981.12. .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357 호

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
영업정지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3 조제 5 항에
의거 다음과 같이 열사용기자재 제조
업체 영업정지 처분하고 동법시행규
칙제 17 조에 의거 공고함.

1981.12. 7.

서울특별시 장

가. 다 음

업체명	소재지	대표자	허가번호	처분내용	비고
삼일사	성동구성수동 1가 8-44	김지수	97	영업정지 6개월 (81.12.7-82.6.5)	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359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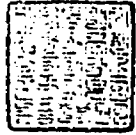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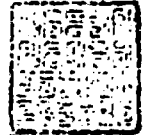
1981.12.10.

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

서울특별시 장

서울특별시 공인율 아래와 같이
신조사용 승인하고 관인규정 제9 조
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 조에
의거 공고한다.

1. 공 인 명 : 별첨
2. 사용개시일 : 81.12.10.
3. 공인의인명 : 별첨

인 영	 		
공 인 명	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 사업소장연 및 제인	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, 징수관인	서울특별시서울대 공원 관리사업소분임지출원인
인 영			
공 인 명	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관 리 사 업 소 물 품 관 라 관 인	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관 리 사 업 소 분 임 경 리 관 인	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관 리 사 업 소 물 품 출 납 원 인
인 영			
공 인 명	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관 리 사 업 소 분임 물 품 출 납 원 인	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관 리 사 업 소 수 입 금 출 납 원 인	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세입세출의 현 금 출 납 원 인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360 호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고 관인규정 제 9 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		1981.12.10. 서 울 특 별 시 장 1. 공 인 명 : 별첨 2. 사용개시일 : 81.12.10. 3. 공인의인영 : 별첨	

공 인 의 인 영

인 영			
공인명	우면산배수지사무소 사무소장외인	우면산배수지 사무소책임	우면산배수지사무소 분임경리관인
인 영			
공인명	우면산배수지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인	우면산배수지사무소 분임지출원외인	우면산배수지사무소 분임물품출납원인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361 호

고한다.

공인신조 사용승인 공고

1981. 12. 10

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사
용 승인하고 관인규정 제9조 및 서
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공

1. 공인명 : 별첨
2. 사용개시일 : 81. 12. 10
3. 공인의인영 : 별첨

공 인 의 인 영

인 영			
공인명	서울특별시 강동구기획감사과 분임물품출납원인	서울특별시 강동구환경과 분임물품출납원인	서울특별시 강동구사회복지과 분임물품출납원인
인 영			
공인명	서울특별시 강동구공원녹지과 분임물품출납원인	서울특별시 강동구수도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	서울특별시 강동구수도공사과 분임물품출납원인
○ 서울특별시공고제 362 호 공인시조 사용승인 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시 조 사용 승인하고 관인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		거 공고한다. 1981. 12. 10 서울특별시장 1. 공인명 : 공원녹지과분임물품출납원인 2. 사용개시일 : 81.12.10 3. 공인의인영 : 별첨	

인 영		○서울특별시공고제 364 호 개포지구 택지개발 사업 실시 계획 공람공고
공인명	공 원 녹 지 과 분임물품출납원 인	
○서울특별시공고제 363 호 공인시조 사용승인 공고 서울특별시 공인물 아래와 같이 사용 승인하고 관인규정 제 9 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 해 공고한다. 1981. 12. 10 서울특별시 장 1. 공인명 : 세정과분임물품출납원의 인 2. 사용개시일 : 81.12.10 3. 공인의인영 : 별첨		1. 강남구 개포지역일대는 건설부장 관으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(건고제 113 호, 81.4.11) 되어 택 지개발 계획승인(81.11.4) 되었거 택지개발촉진법 제 9 조 4 항에 의한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키 위하 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3 조 규 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14 일간 보인다. 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고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송달할 것 이나 미수령된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함. 1981. 12. 12 서울특별시 장 - 사업개요 - 가. 사 업 명 : 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 나. 시행지구 : 강남구 개포동의 8 개동 일대 다. 시 행 자 : 서울특별시장 라. 시행면적 : 6,755,740㎡ (2,043,610 평)
인 영		
공인명	세 정 과 분임물품출납원의 인	

28-18 제 876 호

시

보

1981.12.10

다. 사업시행기간 : 승인일로부터 5개
년간

○서울특별시공고제 366 호

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실시

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제 5 항의 사유

로 다음과 같이 제 2 종 전기공사업
면허가 실효되었기 통발 제 42 조의
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

1981. 12. 12

서울특별시장

아

래

면허번호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실효일자	사유
제 2 종 제 25 호	임광토전(주)	임광수	충구충무로 2 가 62-2	81.11.27	제 1 종 양수에 따른 제 2 종 전기공사업 폐지

○서울특별시공고제 367 호

도시계획사업 (시장) 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414 호 ('80.12.23) 로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가된 잠실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1088 구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85 조 1 항 및 전설부고시 제 463 호 ('7.12.10) 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완료 공고한다.
2. 본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관제도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

게 보인다.

1981. 12. 14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강동구
잠실토지 구획정리 사
업지구 1088 구획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종류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

명칭 : 잠실새마을 종합시장 (소매
시장)

다. 사업의 규모

지적 : 700 평

건축내역			
구 분	면 적 (㎡)	구 분	면 적 (㎡)
저 하 총	2,045.90	3 층	1,107.29
1 층	1,144.93	4 층	308.27
2 층	1,157.49	계	5,755.36

라. 사업시행자: 강동구 잠실동 53-2 잠실새마을종합시장(주) 대표 채순구 마. 사업시행기간: 1981.3.1-1981. 12. 31 바. 준공도면: 생략 사 명 ◎ 1981년 12월 7일자 영제 506 호 도봉구공릉 1 동 지방행정주사 등록 지방공무원법 제 48 조 및 동법 제 53 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69 조 제 1 항 1, 2, 3 호에 의거 파면처함 강 남 구 주 택 파 심 제 권 지 방 행 정 주 사 지방공무원법 제 48 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69 조 제 1 항 2 호에 의거 전직에 처함.	강 서 구 사 회 파 이 권 무 지 방 행 정 서 기 지방공무원법 제 48 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69 조 제 1 항에 의거 전직에 처함. 운 수 1 과 전 이 장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지방공무원법 제 48 조 및 제 53 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69 조 제 1 항 1, 2, 3 호에 의거 파면처함. ◎ 1981년 12월 1일자 영제 507 호 강 남 병 원 심 제 권 지 방 행 정 직 7 급 상당 원래 의하여 그 직을 전함. ◎ 1981년 12월 6일자 영제 510 호 가동차관리사업소 농 병 호 지 방 행 정 서 기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그직을 해제함.
--	---

◎ 1981년 12월 9일자 형제 512 호

내 무 국 임 우 인
지 방 행 정 사 무 관

지방공무원법 제 53 조 및 제 55 조의
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69 조 제 1
항 2 호에 의거 파면에 처함.

중 구 수 도 관 리 과 정 철 수
지 방 행 정 사 무 관

지방공무원법 제 48 조의 규정에 위
배되어 동법 제 69 조 제 1 항에 의거
감봉 1 월에 처함.

도 봉 구 박 주 환
지 방 행 정 사 무 관

지방공무원법 제 48 조 및 동법 제 53
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 69 조
제 1 항 1, 2, 3 호에 의거 파면에 처함

강 서 구 환 생 과 민 문 기
지 방 행 정 사 무 관

지방공무원법 제 48 조의 규정에 위
배되어 동법 제 69 조 제 1 항 각 호
에 의거 전직에 처함.

◎ 1981년 12월 11일자 형제 513 호

도 봉 구 기 획 감 사 과 이 용 대
지 방 행 정 주 사

내 무 국 행 정 과

◎ 1981년 12월 12일자

형제 515 호

성 명	발령 사항	현 부 서	직 급
안 회 수	문 대 문 구	자 동 차 관 리 사 업 소	지 방 행 정 주 사
최 경 락	은 평 구	"	"
남 영 창	관 악 구	"	주 사 보
김 창 성	성 동 구	"	서 기
조 광 삼	"	"	"
정 기 대	동 대 문 구	"	"
김 극 년	상 동 구	"	"
유 금 춘	동 대 문 구	"	"
이 현 희	종 로 구	"	"
최 용 석	강 서 구	"	"
김 진 현	강 동 구	"	"
강 제 욱	성 동 구	"	"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홍재학	성동구	자동차관리사업소	지방행정서기
장주용	성동대문구	"	"
김광규	강서구	"	서기보
권길자	강동구	"	"
한기함	성동구	"	"
신동화	영등포구	"	"
탁철식	강동구	"	"
강희덕	자동차관리사업소	강남구 삼성동	주사
박우석	"	성동대문구 새마을과	주사보
김진새	"	성동구 총무과	"
안삼설	"	영등포구 민방위과	서기
안영래	"	강동구 사회과	"
김현수	"	강남구 시민봉사실	"
김용석	"	성북구 총무과	"
강정규	"	마포구 산업과	"
전상영	"	성동대문구 새마을과	"
윤성순	"	용산구 총무과	"
배인환	"	"	"
이인호	"	중구 시민봉사실	"
김경춘	"	종로구	"
진항근	"	성동구	"
김문식	"	강남구	서기보
이윤웅	"	동작구 새마을과	"
서경석	"	성동대문구 시민봉사실	"
윤석영	"	종로구	"
이윤주	"	강동구 총무과	서기
서울특별시			